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25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2. 21.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6.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81,396,220원의 부과처분 중 4,75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351,500원의 부과처분 중 254,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52,530원의 부과처분 중 4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81,396,220원, 지방교육세 4,351,500원, 농어촌특별세 852,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제3항 결론 부분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내지 제16행의 '2022. 5. 25. 원고에게 취득세 81,028,160원, 지방교육세 4,331,830원, 농어촌특별세 827,970원 합계 86,187,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를 '2022. 6. 9. 원고에게 취득세 81,396,2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4,351,500원, 농어촌특별세 852,530원 합계 86,600,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대시설 구입·설치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4,758,570원, 지방교육세 254,390원, 농어촌특별세 49,850원이다.

	과세표준	구분	본세	가산세합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세액
미술작품	109,500,000	취득세	3,066,010	1,692,560	306,590	1,385,970	4,758,570
		농어촌특별세	34,360	15,490		15,490	49,850
		지방교육세	175,190	79,200		79,200	254,390
		합계	3,275,560	1,787,250	306,590	1,480,660	5,062,810

다) 결국 피고가 2022. 6.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81,396,220원의 부과처분 중 4,75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351,500원의 부과처분 중 254,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52,530원의 부과처분 중 4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1

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왕○○

판사 송○○